정보공개제도 특별교육(본사) 교육일지

부서명 : 차량정비처

담 당	부 장	팀 장
김인호	안상덕	이용기

교육구분	특별교육	교육일시	2017-04-11 ~ 2017-04-11 (1시간)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전파교육자 명단
	교육대상 인원수	18	16	2	선종철 고윤모
	교육실시 인원수	18	14	2	

교육내용	☐ 정보공개제도 교육 실시(총무처-2912호/'17.04.10) ○ 정보공개 청구 절차 - 청구 → 접수 → 결정 → 수수료확인 → 공개실시 ○ 부서별 답변 처리 - 공개여부 결정 - 비공개 결정시 유의 사항 ·부분공개 결정 또는 부존재 결정 여부 신중 검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장소	비 고
	안상덕	처장	차량정비처 사무실	

사고사례 특별교육(본사) 참석자 명단

No	직명	성명	서명	No	직명	성명	서명	No	직명	성명	서명
1	처장	안상덕	안상덕	2	팀장	이용기	이용기	3	팀장	정명묵	정명묵
4	부장	이상복	이상복	5	부장	박달서	파 견	6	부장(업무대행)	이동	이동
7	부장(업무대행)	김종명	김종명	8	부장(업무대행)	박영균	박영균	9	부장(업무대행)	안용석	안용석
10	차장	선종철	교 육	11	차장	고윤모	교 육	12	차장	서재선	서재선
13	과장	김인호	김인호	14	과장	김인열	파 견	15	과장	장영원	장영원
16	과장	조한용	조한용	17	과장	고선아	고선아	18	주임	박태용	박태용
19	선임	김이연	휴 직	20	선임	김일중	파 견	21	선임	윤대건	윤대건
22	사원	문설우	문설우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 일등 Metro"

서 울 메 트 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제도 교육 실시**

1. 관련근거

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

나. 총무처-2402(2017.3.23.)「2017년 정보공개 확대 추진계획」

2. 정보공개제도의 적극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제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각 소속장은 근무여건에 맞추어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경영 실현과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기 간 : '17. 4.10(월) ~ 4.14(금)

○ 대 상 : 전 직원

○ 강 사 : 정보공개책임자(본사)/소속장(현업)

○ 내 용 : 교육자료 참조

나. 기 타

○ 부서별 정보공개책임자 변경 사항 발생시 총무처로 수시 통보(본사)

붙 임 :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1부. 끝.

서울메트로사장 직인생략

수신자 가2-6,가8-36,가38-40,나1,다1,라1-2,마1-12,바1-5,바6-13,사1-11

대리	김은파	부장	김미숙	총무처장	전결 04/10 이권수

협조자

시행 총무처-2912(2017.04.10.) 접수 차량정비처-2095(2017.04.10.)

우 137-712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 www.seoulmetro.co.kr

전화 6110-5342 전송 6110-5349 / moonlit@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이 문서는 서울메트로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 정보공개 청구 절차

○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접수	공개여부 결정	수수료 확인	공개실시 (정보제공)
(청구인)	(주관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 부서별 답변처리 ※ 현업부서는 본사 주무부서에서 처리

1) 공개여부 결정 : 내부결재 후 정보공개 공사시스템에 결정 입력

※ 공개여부 결정 기간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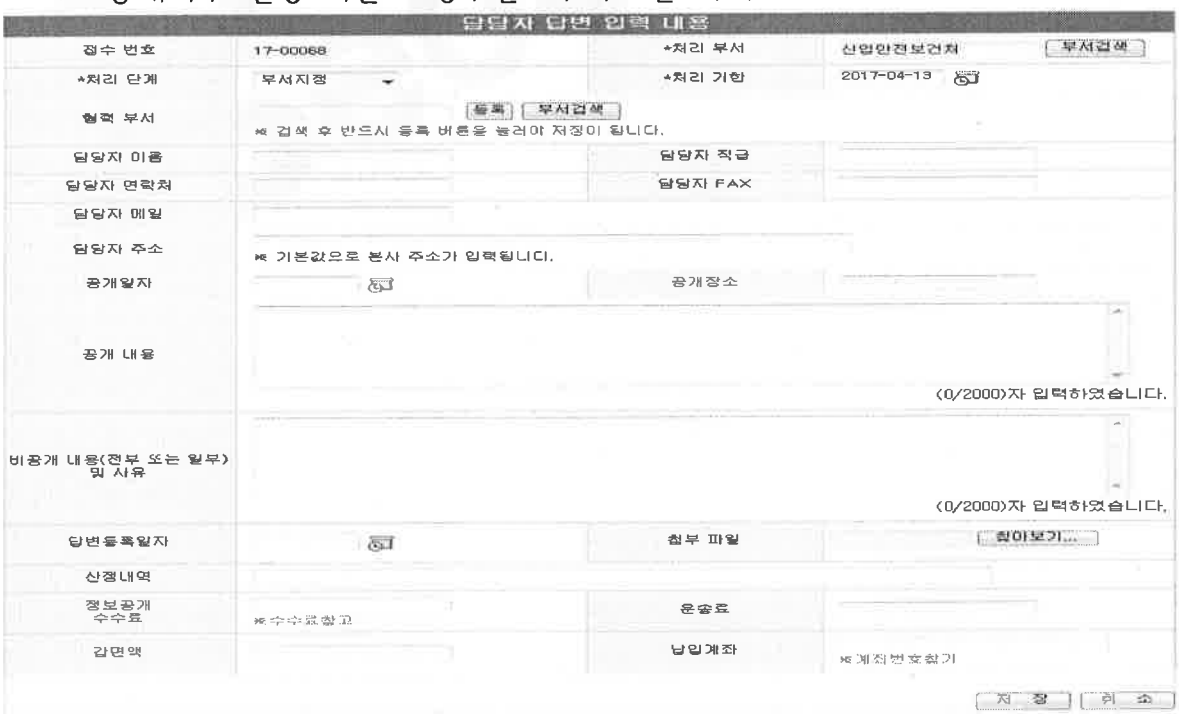

담당자 답변 입력 내용

접수 번호	17-00068	*처리 부서	산업안전보건처 [부서검색]
*처리 단계	부서지정	*처리 기한	2017-04-13
협력 부서	[등록] [부서검색] ※ 검색 후 반드시 등록 버튼을 눌러야 저장이 됩니다.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급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FAX	
담당자 메일			
담당자 주소	※ 기본값으로 본사 주소가 입력됩니다.		
공개일자		공개장소	
공개 내용	(0/2000)자 입력하였습니다.		
비공개 내용(전부 또는 일부) 및 사유	(0/2000)자 입력하였습니다.		
답변등록일자		첨부 파일	찾아보기...
산정내역			
정보공개 수수료	※수수료참고	운송료	
감면액		납입계좌	※계좌번호참고
			[저 장] [취 소]

▷ 로그인 : https://www.seoulmetro.co.kr/hcms/main.action 접속(아이디 : T6001, 비번 : T60016001)

이 문서는 서울메트로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결정에 따른 결재 방법

결정유형	결재선	결정유형	결재선
(부분)공개결정	부서장 전결	기간연장	부서장 전결
비공개 결정	본부장 전결 주관부서장 협조	정보부존재	부서장전결, 주관부서장 협조
즉시공개 결정	결재 생략	기타(종결, 이송)	부서장 전결

※ 즉시공개 대상정보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비공개 결정 시 유의사항

- 부분공개 결정 또는 부존재 결정 여부 신중 검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1호~8호,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각호	
1. 법령상 비밀·비공개	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2. 국방 등 국익 침해	6. 개인사생활 침해
3. 국민의 생명 등 공익 침해	7. 법인 등 영업상 비빌 침해
4. 재판관련 정보 등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비공개 결정 통지서 예시》

1. 내용 : ○○년도 사이버 분야 위기대응 통합연습훈련 설명회 참석결과 보고
2. 근거 :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제2호
3. 사유
   - 상기정보는 우리공사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네트워크 경로 및 IP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고 공개 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정비관리팀 10.1.3.24 2017-04-14 07:42:52

이 문서는 서울메트로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정보 부존재 결정 시 유의 사항

■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 하고 있지 않는 경우 부존재 인정

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2.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 경우

○ 기타 결정 시 유의 사항

◦ 민원이첩 : 청구된 내용이 진정·질의·제안인 경우

◦ 종결처리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 또는 부존재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 한 경우

2) 공개 실시 : 수수료 입금 확인(발생 시) 후 정보 송부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금액 산정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열람·시청</th><th colspan="3">사본·출력물·복제</th><th>비고</th></tr>
<tr><td rowspan="6">원본
(문서 등)</td><td rowspan="2">1일
1시간 이내</td><td rowspan="2">무료</td><td colspan="3">종이출력물</td><td rowspan="6">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td></tr>
<tr><td>A3 이상</td><td>1장</td><td>300원</td></tr>
<tr><td rowspan="2">1시간 초과
30분 마다</td><td rowspan="2">1,000원</td><td></td><td>1장 초과마다</td><td>100원</td></tr>
<tr><td rowspan="2">B4 이하</td><td>1장</td><td>250원</td></tr>
<tr><td>1장 초과마다</td><td>50원</td></tr>
<tr><td rowspan="6">전자파일</td><td rowspan="2">1일
1시간 이내</td><td rowspan="2">무료</td><td colspan="3">종이출력물 : 원본 수수료와 동일</td></tr>
<tr><td colspan="3">전자파일의 복제</td></tr>
<tr><td rowspan="2">1시간 초과
30분 마다</td><td rowspan="2">1,000원</td><td colspan="2">1건 1MB 이내</td><td>무료</td></tr>
<tr><td colspan="2">1MB 초과시 1MB마다
(10장마다 100원 초과할 수 없음)</td><td>100원</td></tr>
</table>

- 수수료 잡이익 처리(해당 부서 은행 계좌)
- 공개되는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우편요금 징수

김인호 정비관리팀 10.1.3.24 2017-04-14 07:42:52

이 문서는 서울메트로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수수료 감면 대상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청구인의 불복처리

① **이의신청**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 시
▼	
②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 회의개최→ 기각/인용/부분인용/각하→ 결과 통보
▼	
③ **행정심판**	불복 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④ **행정소송**	불복 시, 서울행정법원 소송

※ 이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가능

김인호 정비관리팀 10.1.3.24 2017-04-14 07:42:52

이 문서는 서울메트로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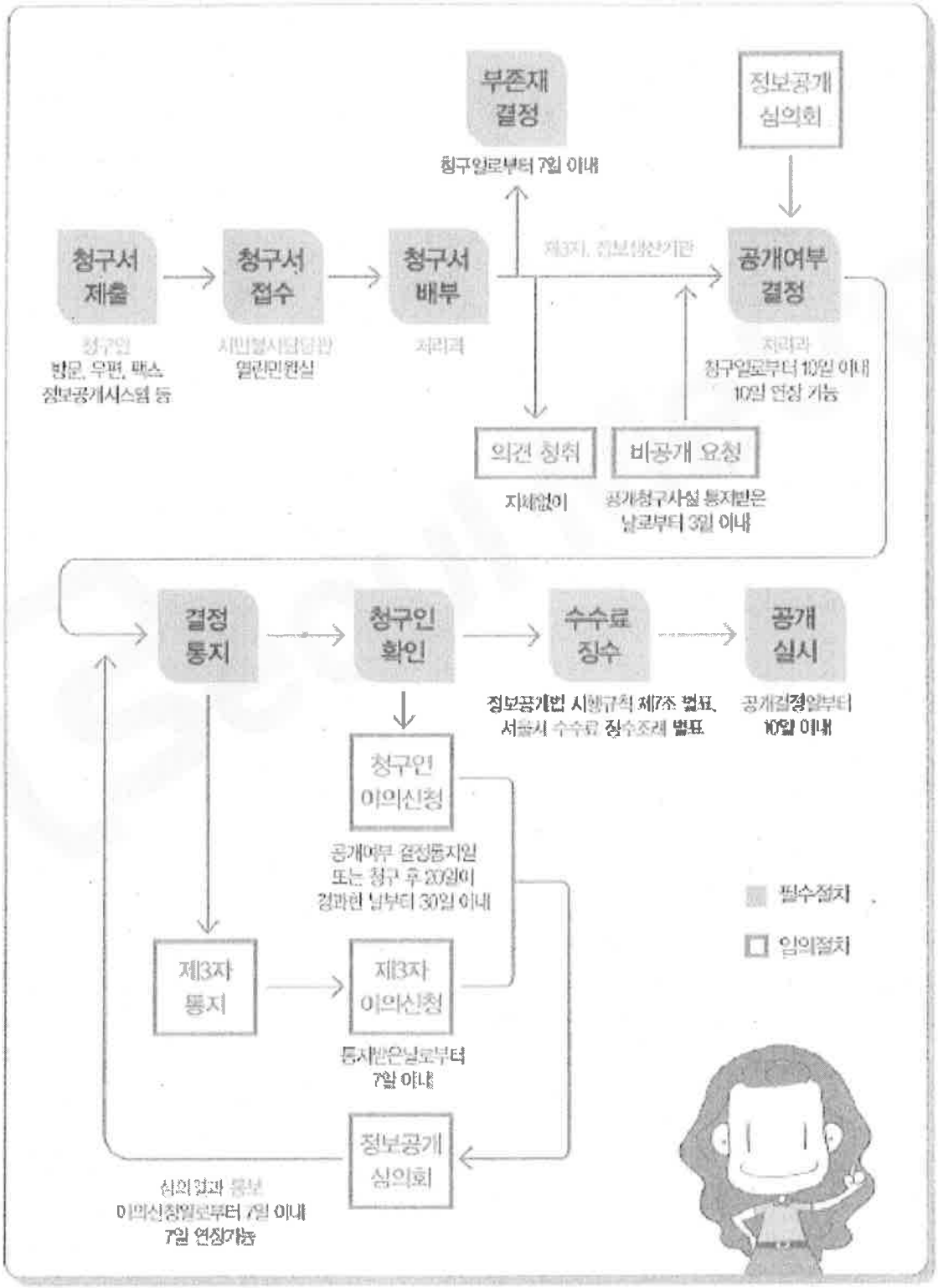

김인호 정비관리팀 10.1.3.24 2017-04-14 07:42:52